

2015년 대한국제법학회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플랫폼 AP 사건 (아라곤국/부스타만테국)

아라곤(Aragon)국은 곤돌라(Gondola)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서 그 면적은 200,000 km²이며 인구는 약 4천만 명이다. 아라곤국은 공업이 발달한 나라로서 공산품 수출이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아라곤국의 동쪽에는 블랙펄(Black Pearl)해가 있으며, 블랙펄해의 동쪽에는 부스타만테(Bustamante)국이 있다. 부스타만테국은 한 개의 큰 섬과 그 밖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면적 150,000 km²이고 인구는 약 3천만 명이다. 부스타만테국도 공업이 발전하였으나 어업 역시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의 본토 사이의 거리는 각국의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지점이 300 해리이며 가장 좁은 지점은 140 해리이다. 그리고 가장 좁은 지점의 부스타만테국 영해기선으로부터 서쪽으로 80 해리 떨어진 지점에 부스타만테국의 섬 제논(Xenon)이 존재한다. 제논섬은 지질학적으로 곤돌라 대륙의 대륙붕 위에 존재하는 섬으로서, 면적이 20,000 m²이며 등대와 헬기착륙장이 설치되어있고 등대관리인이 거주하는 섬이다. 제논섬의 인근 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서 오래전부터 부스타만테국의 어민들이 주로 조업활동을 하였으며 아라곤국 어민들은 여름철에 한 달 정도 청어잡이를 하였다.

1996년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된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은 블랙펄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해서 같은 해부터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에서 쟁점 중의 하나는 제논섬이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5년간의 협상 결과 2001년 양국은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간 블랙펄해에서의 해양경계에 관한 조약」(이하 2001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2001년 조약은 제논섬이 암석인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해양경계를 설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 사이의 대륙붕의 경계는 양국 본토의 영해기선으로부터 중간선으로 한다. 그리고 2001년 조약은 동 조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대륙붕에서 양국의 권리의무는 UN해양법협약 제6부(대륙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2001년 조약은 원칙적으로 양국 본토의 영해기선으로부터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01년 조약은 제논섬 인근 수역에서는 이 섬을 중심으로 하여 한 변의 길이가 20 해리에 이르는 정사각형 모양의 수역(제논어장)을 부스타만테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어업이 자국의 주된 산업인 부스타만테국이 자국 영토인 제논섬 인근수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대신 아라곤국 어선에게는 6월 한 달 동안 부스타만테국 어선과 동등한 조업권을 보장하고 또한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제논섬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고 다만 그

주위에 3 해리 영해를 설정하기로 양국이 타협한 결과이다. 그 결과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은 북에서 남으로 중간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제논어장 수역의 동북쪽 끝단에서 서쪽으로 20 해리 진행하고 이어서 남쪽으로 20해리 진행하고 이어서 동쪽으로 중간선을 만나는 지점까지 20 해리 진행한 후 남쪽으로 내려가는 요철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조약은 동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양국의 권리의무는 UN해양법협약 제5부(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2001년 조약은 제논어장의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아라곤국의 대륙붕에 관한 권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2002년 아라곤국은 제논섬 영해의 북단으로부터 북쪽으로 5 해리 떨어진 제논어장 수역의 해저에서 대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하고 시추하기로 결정하였다. 석유시추를 위해 입찰을 벌인 결과 C국 국적의 회사인 Petromarine이 양허계약을 따게 되었다. Petromarine은 양허지역에 석유시추를 위한 플랫폼(플랫폼 AP)를 설치하여 2003년부터 C국 국민인 Petromarine 기술자들이 석유생산을 시작하였다. 플랫폼 AP는 리히터 규모 8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으며,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한편 부스타만테국도 아라곤국의 플랫폼 AP로부터 동쪽으로 20 해리 떨어진 자국 대륙붕에서 2003년에 매장석유를 확인하고 시추하기로 하였다. 입찰 결과 D국 국적의 회사인 Marinex가 양허계약을 따게 되었다. Marinex는 양허지역에 석유시추를 위한 플랫폼(플랫폼 BM)을 설치하여 2004년부터 D국 국민인 Marinex 기술자들이 석유생산을 시작하였다. 플랫폼 BM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리히터 규모 9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으며, 하루 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한다.

블랙펄해의 해저는 해저지진대가 남북으로 지나가는 곳으로서, 1890년에 현재의 기준으로 리히터 규모 7.4로 추정되는 해저지진으로 인해서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의 해안에 대규모 해일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경미한 지진활동만 있었다. 그런데 2014년 3월 1일 국립아라곤대학교 지진연구소는 과거의 지진 기록을 분석한 결과 블랙펄해의 해저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틀 뒤 국립부스타만테대학교 지진연구소도 대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2014년 3월 10일 국립아라곤대학교 지진연구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블랙펄해 해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국립부스타만테대학교 지진연구소는 리히터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3월 12일 세계기상기구(WMO)는 블랙펄해의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4년 3월 11일 부스타만테국 해양부는 만약 블랙펄해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플랫폼 AP와 플랫폼 BM의 유정에서 기름이 누출된다면 제논어장 전체를 포함하여 최소한 4,000 km²에 이르는 어장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어족자원이 지진 이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라곤국 해양부 장관은 만약 예측한대로 사태가 전개된다면 부스타만테국의 발표처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부스타만테국은 또한 Marinex에게 예상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법을 문의하였고, Marinex는 지진이 임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유정을 폐쇄하는 것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다만 배럴당 50달러인 국제원유가를 기준으로 볼 때 원유생산 중단시 하루 25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더하여 유정 폐쇄 및 생산재개에 드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부스타만테국은 생산중단으로 인해 Marinex가 입게 될 이익 손실과 추가 비용을 전액 보상해주기로 약속하면서 Marinex에게 즉시 플랫폼 BM의 유정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였다. Marinex는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사흘 후인 3월 14일 유정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 부스타만테국은 아라곤국에게 지진으로 인한 제논어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플랫폼 AP의 유정을 폐쇄시키도록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은 아라곤국은 즉시 Petromarine에게 유정 폐쇄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Petromarine은 유정 폐쇄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원유생산을 중단하면 하루 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유정 폐쇄 및 생산재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Petromarine은 플랫폼 AP가 리히터 규모 8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으므로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유정을 폐쇄하였는데 지진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Petromarine에게 지불해야 할 손실보전액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적 위험도 클 것이며 또한 플랫폼 AP가 예상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아라곤국 해양부 장관은 플랫폼 AP의 유정을 폐쇄할 필요가 없다고 3월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제논섬은 부스타만테국의 지방자치 단체인 Tunaland주에 속하는 섬이며 Tunaland주의 어업생산량은 부스타만테국 어업생산량의 2/3를 차지한다. 그리고 Tunaland주의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며 제논어장은 가장 중요한 어장이다. 해저 지진이 임박하다는 소문에 Tunaland주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였으며 부스타만테국 정부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Tunaland주는 부스타만테국 대통령의 고향으로서 그의 정치적 기반이며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여당 소속이었다. 2014년 5월 30일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Tunaland주 국회의원들은 예상되는 지진피해로부터 제논어장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공개서한을 3월 12일 부스타만테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3월 14일 부스타만테국 대통령은 아라곤국 대통령에게 플랫폼 AP의 유정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지만 아라곤국 대통령은 자국 해양부장관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부스타만테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부스타만테국 대통령은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제논어장을 지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부스타만테국 국방장관은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플랫폼 AP를 강제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부스타만테국 대통령은 이 발언을 수긍하면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국방장관에게 당부하였다.

부스타만테국 국방장관은 참모들과 상의한 결과 특수부대의 호위를 받는 공병장교들을 플랫폼 AP로 급파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전명 제논실드 하에 경무장한 부스타만테국 해병대원 20명과 공병장교 20명을 태운 CH-47 치누크 헬기가 3월 17일 자정 무렵 제논섬에 착륙하여 대기하였다. 곧 이어 아라곤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부스타만테국 국방장관은 작전개시를 명령하였고 3월 18일 새벽 4시 치누크 헬기는 플랫폼 AP를 급습하였다. 플랫폼 AP에서 작업하던 기술자들은 부스타만테국 해병대원들에 의해 쉽게 진압되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 그리고 부스타만테국 공병장교들의 감독 하에 플랫폼 AP의 기술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하여 3월 19일 오전에 유정을 폐쇄하였다. 한편 플랫폼 AP가 급습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아라곤국은 3월 18일 오전 7시 군함 빅토리(The Victory)호를 현장에 급파하였고, 빅토리호는 플랫폼 AP를 점거하고 있는 부스타만테국 군인들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스타만테국 군인들은 퇴거를 거부하며 유정 폐쇄 작업을 독려하였고, 빅토리호는 플랫폼 AP를 순회하면서 퇴거 불응시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유정 폐쇄작업을 마친 부스타만테국 군인들은 플랫폼 AP에서 계속 빅토리호와 대치하다가 3월 20일 자정 야음을 틈타서 치누크 헬기로 제논섬을 향해 출발하였다. 하지만 곧 빅토리호의 레이더에 헬기가 포착되었으며 빅토리호 함장은 함대공 미사일 공격을 명하였고 부스타만테국 헬기는 격추되어 부스타만테국 군인이 전원 사망하였다. 사건 직후 아라곤국은 부스타만테국에 의한 플랫폼 AP점거를 불법적인 무력공격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으며 빅토리호에 의한 부스타만테국 헬기 격추를 적법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부스타만테국은 자국 군에 의한 플랫폼 AP 점거 및 유정 폐쇄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본질적인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긴급피난(necessity)이며 아라곤국의 빅토리호가 부스타만테국 헬기를 격추한 행위야말로 불법적인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 AP 사건에 대해서 양국이 상호 비방을 계속하던 중인 3월 25일 블랙펠해의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앙지는 아라곤국 대륙붕의 해저로 밝혀졌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플랫폼 AP는 크게 파손되었으며 플랫폼 AP의 유정에서 다량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반면에 플랫폼 BM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플랫폼 BM의 유정으로부터 유출된 원유량도 평소 원유생산 작업시 유출되는 양보다 많지 않았다. 지진의 여파가 가라앉은 3월 27일 양국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약 30만 배럴의 원유가 플랫폼 AP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어족자원이 복구되기까지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3월 30일 발표하였다. 그리고 부스타만테국 정부 산하기관인 경제개발연구원은 플랫폼 AP로부터 원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복구비용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플랫폼 AP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2014년 4월 5일부터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은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양국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아라곤국은 부스타만테국에 의한 플랫폼 AP 점거가 불법적인 무력공격이며 빅토리호에 의한 부스타만테국 헬기 격추는 적법한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부스타만테국은 플랫폼 AP 점거 및 유정 폐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며 빅토리호가 부스타만테국 헬기를 격추한 행위는 적법한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라곤국은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해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라곤국은 플랫폼 AP의 유정을 폐쇄하지 않기로 한 조치는 예상되는 지진에 대한 정보나 플랫폼 AP의 상태를 볼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에 해당되며 나아가 지진으로 인한 오염피해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스타만테국 공병장교들이 플랫폼 AP의 유정 폐쇄를 감독하였고 하루 만에 유정을 부실하게 폐쇄하였으므로 오히려 부스타만테국이 원유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부스타만테국은 아라곤국이 UN해양법협약상 해저활동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지진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비하여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스타만테국은 자국이 플랫폼 AP의 유정을 폐쇄시킨 것은 아라곤국이 행하였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스타만테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행한 것일 뿐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양국 정부는 2014년 5월 10일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ICJ에게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부스타만테국에 의한 플랫폼 AP 점거는 국제법상 긴급피난(necessity)에 해당하는가?
- (2) 아라곤국 군함 빅토리호에 의한 부스타만테국 헬기 격추는 국제법상 자위권행사에 해당하는가?
- (3) 아라곤국이 플랫폼 AP의 유정을 폐쇄하지 않은 행위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 (4) 플랫폼 AP의 유정으로부터 원유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 중 누가 책임을 지는가?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은 1960년부터 국제연합 회원국이다.